

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내 보안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원계획 내 소상공인 범죄예방 사항 신설 (안 제5조)
-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근거 마련 (안 제7조)
-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(안 제23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,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보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.
- 다만, 안 제5조 및 안 제7조의 범죄예방 지원 관련 사항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가 2025년

12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,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상위법 시행시기 및 내용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반면, 안 제23조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는 타당하나, 범죄예방 지원사업 관련 조문은 상위법 시행일 및 위임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